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366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5. 10. 20.

4. 회부일자 : 2025. 10. 23.

Ⅱ. 제안이유

○ 관급자재, ICT 운영 및 사무가구 등 계약건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 중 일부를 통합관재센터 예비 운영 및 신축건물 베이크아웃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, 그 외 2026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2025년도 말 조성액 변경 : 총 995,597천원 증가

○ 2026년도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을 2025년도 예치금으로 편성(연도말 조성액 증가)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4년도말 조성액(a)	'25년도 기금운용계획[1]		'25년도말 조성액 (d=a+b-c)
		수입계획(b)	지출계획(c)	
기정(A)	114,625,979	14,947,051	129,573,030	0
변경(B)	114,625,979	14,947,051	128,577,433	995,597
증감(C=B-A)	0	0	△995,597	995,597

2.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변경(A)	기정(B)	증 감 (C=A-B)	증감율 (D=C/B)
합 계				129,573,030	129,573,030	0	0
①	기관운영		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교육행정기관시설		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	기관시설유지관리	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		신청사 건립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		설계비	58,118	58,118	0	0
			시설비	113,065,560	113,665,560	△600,000	△0.53
			감리비	3,692,268	3,692,268	0	0
			시설부대비	1,150,000	820,723	329,277	40.12
			이사비	385,000	385,000	0	0
			미술작품 설치비	677,000	677,000	0	0
			ICT시스템 운영	953,861	1,105,000	△151,139	△13.68
			전산망시설비	435,000	435,000	0	0
			ICT시스템HW	3,581,795	3,737,360	△155,565	△4.16
			ICT시스템SW	1,602,470	1,754,640	△152,170	△8.67

1) 재무활동(예치금) 제외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변경(A)	기정(B)	증 감 (C=A-B)	증감율 (D=C/B)
			사무레이아웃	2,700,000	2,966,000	△266,000	△8.97
			급식 기구	276,361	276,361	0	0
②	재무활동			995,597	0	995,597	100
	예치금			995,597	0	995,597	100
		예치금		995,597	0	995,597	100

Ⅳ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66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○ 동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검토의견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2016년 설치된 것으로[2],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조성 중인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 중임.

○ 한편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「지방기금법」) 제8조는[3]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

2) 2024년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명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로, 기금명이 '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'에서 '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'으로 변경되었음.

3) 「지방기금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

의결을 받도록 하고, 같은법 제11조제2항은[4] 기금운용계획 상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행 기금운용계획 대비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'예치금' 이 0원에서 9억 9천 6백만원으로, 현행 기금운용계획 대비 100% 증가함에 따라 제출되었음.

○ 한편, 동 변경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고,[5] 그 변경 목적이 공사 진행률을 고려해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시설부대비와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바, 절차적으로나 변경 목적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, 현행 기금운용계획 대비 수입계획 상 변동은 없으며, 지출계획 상 "기관운영비(비융자성사업비)" 를 1,295억 7천 3백만원에서 9억 9천 6백만원 감소한 1,285억 7천 7백만원으로, "재무활동(예치금)" 을 0원에서 9억 9천 6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- 세부적으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발생한 감액은 LED 조명, 객석 의자, 구내 방송 장치 등 시설공사 관련 관급자재 납품, ICT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, 사무 가구 구매 등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

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「지방기금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5) 2025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(회의록 첨부) (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-5920, 2025.9.30.)

낙찰 차액에서 발생하였음.

[표-1] '기관운영비' 중 사업내역별 낙찰차액 발생 현황[6)]

(단위: 원)

사업내역	낙찰차액 발생 주요 용역	낙찰차액	지출계획 상 증감액
시설비	소 계	610,980,250	△600,000,000
	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(금속제패널) 구매	212,498,000	
	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(LED일반조명 및 몰드바 조명) 구매	41,662,000	
	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(LED경관조명) 구매	26,292,000	
	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(구내방송장치_회의실 등) 구매	95,618,600	
	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(객석의자) 구매	83,620,840	
	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(구내방송장치_대강당 등) 구매	151,288,810	
ICT 시스템 운영 등	소 계	863,831,000	△458,874,000
	ICT시스템 (가상데스크톱인프라(VDI) 하드웨어 등 낙찰차액 발생)	863,831,000	
사무 레이아웃	소 계	250,390,600	△266,000,000
	신청사 회의공간 등 사무가구 구매	57,501,700	
	신청사 직무공간 사무가구 구매	153,058,600	
	신청사 리더공간 및 기타공간 사무가구 제작·설치	39,830,300	

- **반면, 금번 변경안에서는 신청사 통합관제센터 예비 운영과 베이크 아웃(Bake Out)[7)] 등을 실시하기 위해 '시설부대비'에 3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.**

- **세부적으로 시설부대비에 편성된 '통합관제센터 예비운영'은 이전에 앞서 통합관제센터의 예비 운영을 통해 ICT 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탐색·보완하기 위한 사업이고, '기타 시설 분담금 등'은 베이크 아웃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입주 전 건축자재나 마감재로부터**

6) (청사이전추진단)시의원(박상혁의원) 요구자료 제출(2906번) (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-7185, 2025.11.14.)

7) 베이크 아웃(Bake Out)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. (자료 :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368호, 2020.4.30. 개정·시행) [별표 2] 플러쉬 아웃(Flush-out) 및 베이크 아웃(Bake-out) 시행기준)

배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임.

[표-2] '기관운영비' 중 시설부대비 세부 증액 내역[8)]

사업내역	추가 예산 소요 내용	소요예산(안)	지출계획 상 증감액
시설 부대비	소 계	329,277,000	329,277,000
	통합관제센터 예비운영	218,913,000	
	기타 시설분담금 등	110,364,000	

○ 금번 변경안 중 지출계획에 편성된 시설부대비의 개별사업별 예산은 개별적으로 수립된 사업계획(안)에[9)] 근거하여 예산이 수립되었고, 그 내용 역시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계된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○ 한편, '예치금' 은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사업비 절감액 중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을 제외한 여유 재원 9억 9천 6백만원을 운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임.

-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「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은 "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수입 증대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으로 계상" 하도록[10)] 정하고 있음.

○ 그러므로 금번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살펴본 사실과 같이 사업추진 중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일부 재원은 건립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바,

지출계획의 내용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나 동 기금 설치 및 운용

8) (청사이전추진단)시의원(박상혁의원) 요구자료 제출(2906번) (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-7185, 2025.11.14.)
9)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베이크아웃 용역 추진계획(안) (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-6588, 2025.10.30.),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 계약 추진 계획안(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-5987, 2025.10.2.)
10) 교육부(2024.8.), 「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, 143쪽.

조례 제4조 각호에서[11] 정한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.

□ 이상으로 「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지수(2180-8264)

11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2. 설계비 및 감리비
3.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